#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09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 김상훈·강대식·김소희

김선교 • 서명옥 • 고동진

박충권 • 이달희 • 박수영

권영진 · 신동욱 · 이헌승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승격후보자명부,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무등 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 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및 제27조제1항).

#### 법률 제 호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특별승격) 외교부장관은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격 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자녀가 2명인 경우: 61세
- 2. 자녀가 3명인 경우: 62세
- 3.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63세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3조의5(특별승격) 외교부장관
	은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
	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
	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u>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대</u>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u>수 있다.</u>
제27조(정년) ① 외무공무원의 정	제27조(정년) ①
년은 60세로 한다. <u>&lt;단서 신</u>	
<u>설&gt;</u>	가 2명 이상인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
	<u>다.</u>
<u>&lt;신 설&gt;</u>	1. 자녀가 2명인 경우: 61세
<u>&lt;신 설&gt;</u>	2. 자녀가 3명인 경우: 62세
<u>&lt;신 설&gt;</u>	3.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63
	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